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밸류웨이40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(생 략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생 략)	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<u>한도로 하여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3조(판매가격) ①(생 략) ②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생 략)	제23조(판매가격) ①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제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제4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	제25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<u>3영업일</u>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<u>4영업일</u>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 다만,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

	이 아닌 경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(생략)	우에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. ②제24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(집합투자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)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4영업일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5영업일)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. ③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생략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생략) ⑥ (생략)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제4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	제44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

	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 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생 략)	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 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 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 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 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~ ④(현행과 같음)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 항 반영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 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생 략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 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 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 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 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 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	제47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 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 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 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<u>으로서</u> 설정 및 설 립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 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 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. 투자신탁이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 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 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 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

	있다는 사실 10. (생 략) ③ ~ ⑩ (생 략)	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 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 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⑩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<u>부 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